

2024 박문각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본서 정오표(초판기준)_07

(2024.08.19. 기준 법 개정 반영, 강경구 교수)

페이지	개정 (수정 전)	개정(수정 후)
제1편 주택법		
p79	(5)	<p>(5) 건축물 최고높이의 완화</p> <p>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41조 제8항, 영 제60조의8).</p> <p>기존 (5) ⇨ (6)</p>
p88	중간	<p>(3) 공동주택의 바닥구조</p> <p>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규정 제14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②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② ①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제4편 공공주택 특별법		
p375	위 6째줄	5.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위 5째줄	(5)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p404	위 10째줄	3.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p411	위 6째줄	

※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규정은 2024.9.20.까지 한시적 효력이 있는 규정임.
따라서, 「주택법」에서 분양가상한제 제외지역 규정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사업 및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규정에서 언급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시 준용된다고 봄. 아직 법령규정은 있지만 이번 시험에는 반영되기 어려우며, 만약 반영된다면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제5편 건축법

p444 〈개정표1 누락분〉	(5) 이전 다음 신설	12. 결합건축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 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12. ~ 33. ⇨ 13. ~ 34.
p455 〈개정표3 누락분〉	위13째줄 신설	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 21조의2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p462 〈개정표2 누락분〉	중간 박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 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 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